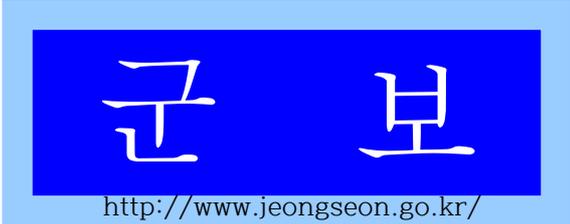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5호 2022. 4. 20.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53호 정선군 천포리(천포마을) 지구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  
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1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426호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  
고.....3
- 정선군 공고 제2022-452호 정선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0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11호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5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12호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3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53호

정선군 천포리(천포마을)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정선군 천포리(천포마을)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정선군 천포리(천포마을) 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3. 사업비 : 2,117,000천원

- 국고 (1,521,000), 지방비(524,000), 자부담(72,000)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천포리 일원
- 노후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개량 21호, 빈집철거 2호, 집수리 16호
- 안전·위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 태양광가로등 12개소, 소화전 4개소, 스마트가로등(CCTV) 4개소, 로고젝터 3개소, 방송

장비구축 53개소, 재래식화장실(개인,공용) 철거 12개소, 경로당 화장실 증축 1개소

- 하천변 안전휨스 설치 400m 마을하천다리 확장 3개소, 주차장조성 600㎡, 빨래터 쉼터 조성 1개소

○ 주민공동시설 및 경관시설 정비

- 커뮤니티센터 조성 107㎡, 귀농·귀촌의집 조성 34.65㎡, 담장정비 300m, 분리수거장 조성 4개소

○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 휴먼케어(마을가꾸기·셀프집수리·주민문화복지 교육, 시설운영·경관협정 컨설팅) 1식
- 주민역량강화(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1식

5.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6.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4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과(033-560-2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426호

##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7일

정 선 군 수

### 1. 제정이유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 필요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 안 제3조
- 다. 군민의 권리와 의무 : 안 제4조
- 라. 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5조
- 마. 조성기준의 설정 : 안 제6조
- 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7조
- 사. 재정확보 : 안 제8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 4. 입법예고 기간 : 2022. 4. 7. ~ 4. 26.(20일간)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정선군청 안전과

- 주소: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 전화: 033-560-2366
- 팩스: 033-560-2174
- 이메일: kgt156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항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

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자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 정비
5. 보행자길 시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선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때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세워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설치된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재정확보)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례법령 등 발췌문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지역위원회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2-452호

정선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반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반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 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반장 건강검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제3호)
  - 건강검진을 추가함
- 반장 통신요금 지원확대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제4호)
  - 연 상한 5만원 → 연 상한 10만원

3. 예고기간 : 2022. 04. 13. ~ 2022. 05. 03.(20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 전 화 : 033 - 560 - 2236
- ▷ F A X : 033 - 560 - 2590
- ▷ E-mail : doswat@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호 중 “상해보험 가입” 을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5만원” 을 “1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사기진작) 군수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u>상해보험 가입</u></p> <p>4. 연 <u>5만원</u> 이하의 통신요금</p> <p>5. (생략)</p>	<p>제12조의2(사기진작)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u></p> <p>4. -- <u>10만원</u> -----</p> <p>5. (현행과 같음)</p>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11호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공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상위 근거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공인을 등록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인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공인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체를 함께 사용
- 공인의 교부, 등록, 재등록,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공인의 공고,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예고기간 : 2022. 4. 14 ~ 4. 25(초일불산입 / 11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 까지 정선군의회의회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공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정선군의 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정선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직인 : 정선군의회 의장 및 정선군의회 사무과장 그리고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 2. 청인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 3. 특수관인 :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하되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제4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6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과 공인 등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로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정선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현재 사용중인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사무과장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

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 표]

## 공인의 규격

공인의 종류		규 격
청 인		3.5cm 정사각형
직 인	정선군의회 의장	2.0cm 정사각형
	정선군의회 위원회 위원장	2.4cm 정사각형
	정선군의회 사무과장	2.0cm 정사각형
특수관인	재무관, 지출원	2.0cm 정사각형
	출납원	1.8cm 정사각형



[별지 제2호서식]

폐 인 대 장

공인명	신 조 연월일	사용개시 연월일	규 격	서 체	폐 인		폐인의 인영
					연 월 일	사 유	

[별지 제3호서식]

##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관인 명칭						
종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관인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당시 관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폐기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 &lt; 작성 방법 &gt;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공인 인영부

기관명 : 정선군의회

(    년    월    일 현재)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공인명	공인의 인영

## 관 계 법 령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4절 관인의 관리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4조(특수 관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부장관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하는 관인은 외교부장관이, 검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군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과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

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8조(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①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기 위하여 그 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37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전자이미지관인을 전자입력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관장이 제37조에 따라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

받아 전자입력하거나 폐기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할 수 있다.

제39조(공고) 제36조에 따른 등록기관은 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2-12호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정선군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및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안 제4조~제5조)
- 군민참여 유도 (안 제6조)
-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 (안 제7조)
-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 ~ 제9조)
- 군민정원사, 정원전문가의 양성, 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및 군민정원사 정원전문가 활성화 등 (안 제10조 ~ 제12조)
- 포상 (안 제13조)

3. 예고기간 : 2022. 4. 14~4. 25(초일불산입 / 11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법」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은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7. “군민정원사”란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군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8.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15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9.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정선군이 정원산업의 육성, 정원치유 및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지역별·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정원문화 육성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민참여 유도)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 구성 및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5.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활용·컨설팅 등 군민역량강화사업
6.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군민과 함께 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 가꾸기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정원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3.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4.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1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해설사 또는 관리자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또는 정원·군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7. (생략)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⑦ 시·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전문개정 2011. 7. 25.] [제목개정 2015. 1. 20.]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9. 1. 15.] [중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산림청장은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⑤ 그 밖에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 20.]

[제18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9. 1. 15.>]

제2절 정원의 등록·운영 등 <신설 2021. 4. 13.>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 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2., 2021. 4. 13.>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1. 4. 13.>
-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9. 1. 15.>

[본조신설 2015. 1. 20.]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①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본조신설 2015. 1. 20.]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으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6(정원의 운영·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5. 1. 20.]

[제목개정 2021. 4. 13.]

[제1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7로 이동 <2019. 1. 15.>]

제18조의11(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3.]

[종전 제18조의11은 제18조의15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13(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1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3은 제18조의17로 이동 <2021. 4. 13.>]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16. 12. 2., 2021. 4. 13.>

제18조의15(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

[제1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5는 제18조의19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16(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5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15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5. 1. 20., 2016. 12. 2., 2019. 1. 15., 2021. 4. 1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8조의15 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문개정 2011. 7. 25.] [제목개정 2016. 12. 2.]

[제1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6은 제18조의20으로 이동 <2021. 4. 13.>]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본조신설 2007. 1. 3.] [제목개정 2015. 1. 20.]

[제1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7은 제18조의21로 이동 <2021. 4. 13.>]